

# 학생 징계 규정

2006. 1. 19 제정

2012. 5. 17 개정

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 제59조 및 대학원 학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징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2.5.17)

제 2 조 (징계의 사유)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.

1. 학칙 등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
2. 각종 시험 등 학업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학생
3.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
4. 학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
5. 불법행사를 개최하거나 허가없이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한 학생
6. 학교건물에 무단히 침입하거나 학교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학생
7. 학교 또는 학교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학생
8. 학교 기물의 손괴, 학교 재산의 부당사용 또는 무단반출 등의 행위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학생
9. 학내에서 폭언을 포함한 폭행, 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한 학생
10. 학내 컴퓨터·통신망·데이터·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한 학생
11.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

제 3 조 (징계의 내용) 학칙 제59조 제2항 및 대학원 학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12.5.17)

1. 견책 : 10시간 이내의 교내 근로봉사와 반성문 제출
2. 근신 : 30시간 이내의 교내 근로봉사와 반성문 제출
3. 유기정학 : 10일 이상 20일 이내의 학생자격 정지
4. 무기정학 : 21일 이상의 학생자격 정지
5. 퇴학 : 일체의 학생자격 박탈

제 4 조 (징계의 기준) ①징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,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, 퇴학 중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②학생이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한다.

1. 견책 :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려고 시도하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어긴 경우

2. 근신 : 부정행위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준비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
  3. 유기정학 : 부정행위를 하다가 감독자에게 적발되거나 이에 준하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는 경우
  4. 무기정학 : 대리시험을 의뢰하였거나 대리시험을 행한 경우, 기타 타인과 공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
  5. 퇴학 : 부정행위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정도가 학생의 본분에서 크게 벗어나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③견책 또는 근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학생이 재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한다.

## 제 2 장 징계의 절차

제 5 조 (신고의무)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교직원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학생의 소속 대학(원)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조 제2호 이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들이 2개 이상의 대학(원)에 소속되어 있는 때에는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12.5.17)

제 6 조 (징계발의) ①제5조의 신고를 받은 학생처장 또는 대학(원)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처장은 중앙지도위원회에, 대학(원)장은 대학(원)지도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하여야 한다. (개정 2012.5.17)

1. 사건 경위서 또는 시험 부정행위자 신고서
2. 본인의 진술서
3. 지도교수의 의견서

②휴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견책,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학생이 복학한 후에 징계한다.

제 7 조 (지도위원회의 징계심의) ①중앙지도위원회는 2개 이상 대학(원)의 학생이 관련된 징계사건과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건을 관할하고, 대학(원)지도위원회는 당해 소속 학생의 시험 부정행위를 포함한 징계사건을 관할한다. (개정 2012.5.17)

②중앙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(원)지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학(원)지도위원회에 조속히 그 징계사건을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(개정 2012.5.17)

③중앙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징계사건을 중앙지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, 그 경우 중앙지도위원회가 징계제청권을 가진다.

1. 대학(원)지도위원회가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제청하기로 의결한 경우
2. 대학(원)지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
3. 대학(원)지도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징계사건

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

(개정 2012.5.17)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사건을 중앙지도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학(원)지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 (개정 2012.5.17)

제 8 조 (대학(원)지도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) 대학(원)지도위원회가 학생에 대한 징계요구를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(개정 2012.5.17)

제 9 조 (청문 등) ①중앙지도위원회 및 대학(원)지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 학생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징계대상 학생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거나 위원회에서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징계대상 학생의 진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. (개정 2012.5.17)

②징계대상 학생이 진술이나 진술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진술서 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 또는 학생처부처장의 경위보고서나 확인서로 학생의 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징계안 심의 및 확정) ①중앙지도위원회 및 대학(원)지도위원회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징계제청의 의결을 한 때에는,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교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. (개정 2012.5.17)

②총장은 징계안에 대한 교무회의의 심의·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확정한다.

### 제 3 장 징계처분에 따른 후속조치

제 11 조 (징계학생에 대한 학사처리) ①학생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실을 해당 대학(원)지도위원회 위원장과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(개정 2012.5.17)

②해당 대학(원)지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대상 학생 및 학부모,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과 신고 교직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. (개정 2012.5.17)

③제2조 제2호의 징계사유의 경우 교무처장은 징계의 확정 사실을 해당 학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고 피징계자의 당해 학기 당해 과목의 성적을 낙제처리하며, 징계가 유기정확 이상인 때에는 징계기간 동안 당해 학생을 결석처리하여야 한다.

④징계내용이 유기정확 이상인 때에는 이를 학적부에 기재한다.

⑤이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을 한다. 다만 총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제한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다.

1. 장학금 수혜 자격의 박탈
2. 각종 학생공직 취임 자격의 박탈
3. 조기졸업 자격의 박탈
4. 교환학생 지원자격의 박탈

학생 징계 규정

5. 각종 추천의 제한

제 12 조 (무기정학의 해제 절차) 무기정학은 중앙지도위원회 또는 대학(원)지도위원회  
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. (개정 2012.5.17)

제 13 조 (징계기간 중의 휴학) ①징계기간 중 휴학하는 경우 휴학기간은 징계기간  
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②무기정학기간 중 휴학한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의 해제는 학생의 복학 후 결정한다.

제 14 조 (기물손괴 등에 대한 배상청구) ①총장은 학교 기물을 손괴하거나, 학교재산의  
부당사용 및 무단반출하는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그 손해액에  
상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총장은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중앙지도위원회 또는 대학(원)지도위원회의  
심의를 거쳐야 한다. (개정 2012.5.17)

제 15 조 (징계의 재심 청구) ①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지  
도위원회에 이미 정하여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·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

2. 징계처분 후 징계 결정을 번복할 만한 중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

②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 
총장에게 재심의 · 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.

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후 1년 이내에  
재심의 · 의결을 청구하여야 한다.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다시  
진행한다.

(본조신설 2009.8.31)

부 칙(2006. 1. 19 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8. 31 개정)

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5. 17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